사랑이 샘솟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2023학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

금계초등학교

2023학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

Ⅰ 추진 근거

1. 「헌법」 제 31조 제 4항, 「교육기본법」 제 14조, 「교육공무원법」 제 43조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3.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4. 「2023 경기주요 기본계획」 정책3. 교육활동 보호 강화
5. 「2023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

Ⅱ 목적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3. 교권 침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

Ⅲ 방침

1. 교권침해 예방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교권침해 예방 시스템 정착
2.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예방 연수 지원으로 교권존중 문화 조성

Ⅳ 세부 추진 사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가.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구성 및 회의 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
- **임기 :** 2년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 **위원 구성 :**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으로 하며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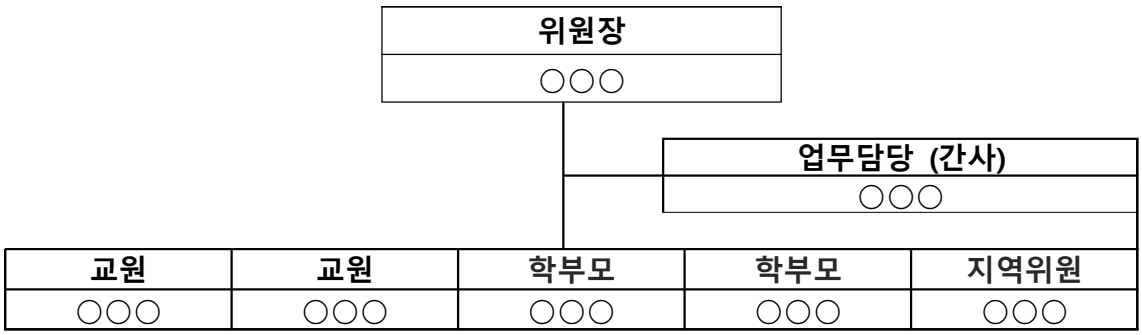
*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 교권위 규정 5조 ③항에 의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객관적 절차 진행과 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과는 겸임할 수 없다.**



연번	성명	소속	위원	임기	비고
1	○○○	금계초등학교	위원장	2023.3.1.-2024.2.29.	교권보호책임관
2	○○○	금계초등학교	교원위원	2023.3.1.-2024.2.29.	
3	○○○	금계초등학교	교원위원	2023.3.1.-2024.2.29.	
4	○○○	금계초등학교 학부모회	학부모위원	2023.3.1.-2024.2.29.	
5	○○○	금계초등학교 학부모회	학부모위원	2023.3.1.-2024.2.29.	
6	○○○	일산동부경찰서	지역위원	2023.3.1.-2024.2.29.	학교담당경찰관
간사	○○○	금계초등학교	간사	2023.3.1.-2024.2.29.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2) 회의 운영

가) 회의 소집 및 정족수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이내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제6조]

나)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 16조)

제 척	회 피	기 피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당연 배제되므로 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원들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미리 살핀 후 출석요청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함.		• 당사자는 기피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당사자의 기피 신청 있는 경우 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기피 신청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사유가 있는지 심의하여 기피 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함. • 기피사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함. (다만 출석위원에는 포함.) • 기피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기각함.

제척 등 사유있는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법제처 09-0129, 2009.5.29. 참조)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1)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처리 절차

단계	방법 및 절차	비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교권침해교원 → 교권보호업무 전담교사 ▪ 선도처분요구서 제출	신청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사안 심의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사 및 교권침해학생의 진술기회 부여 (교사는 선도처분요구서, 학생은 사건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교권침해 사안의 교권침해 여부 결정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교권침해 여부 결정내용 학교장에게 보고 ▪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 학교장에게	학교장
⬇		
교권침해사안 보고	▪ 초,중학교→지역교육지원청 교권담당부서(교수학습지원과 또는 초.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담당부서 및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동시 보 고 (도교육청 Fax : 821-1079)	사안보고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Wee센터)
⬇		
교권침해 사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교권침해사안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생활교육위원회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규칙

2)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처리 절차

단계	방법 및 절차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피해교사 : 보호 및 안전조치 ▪ 교권침해 학부모: 수사기관에 도움 요청
⬇	
교권침해 사안 조사(관련자료 수집, 사실관계조사)	▪ 교권침해(범죄)행위 제지 → 관할 경찰서 ▪ 교권침해(범죄)수사 개시 → 관할 경찰서 ▪ 관련자료 수집: 시기, 내용 등의 사안 보고서 작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권침해사안 조정·중재	▪ 피해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의 진술 기회부여 (피해교원은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중재조정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요청
⬇	
고소.고발 및 법률상담 지원	▪ 고소·고발 사안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 인권보호센터 교권보호팀 법률상담 요청
⬇	
해결확인 재발방지	▪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 사안 결과 처리 ▪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대응시 점검 사항(체크리스트)

	점검사항	표시(O, X)
1	관련자를 분리하였나?	
2	학교장 또는 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알렸나?	
3	교육활동 침해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렸나?(학생사안만 해당)	
4	발생한 사안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해 판단하였나?	
5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및 목격한 학생을 파악하였나?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통보하였나?	
7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보고하였나?	
8	교사의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 조치를 결정하였나?	
9	다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안정화 조치를 내렸나?	
10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단위의 대책을 수립하였나?	

❑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가. 교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연수 및 집중 홍보

1) 시기 : 2023년 3월 ~ 5월, 10월 1주

2) 대상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교원, 학부모, 학생

3) 내용 : 교권침해 사례를 통한 교권침해 대응 방법 및 예방교육

4) 방법 : SNS, 가정통신문, 소식지,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권존중 홍보

나. 교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스승존경 · 제자사랑 풍토 조성

1)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문화 만들기

- 상호 인권 존중으로 교사-학생 간 상호 신뢰 구축
  - 3월초 학생생활약속 학급별 게시 및 상기하기
  - 정기적인 대화 및 상담
- 사제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 등교 시 웃는 얼굴로 사제간 아침 맞이 인사 나누기
  - 교사-학생 상호간 존댓말 쓰기
- 교사와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
  - 교사와 학부모 상담시간 수시 운영
  - 학기별 1회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함께하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평가 실시

2)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

- 일시 : 2023년 3월 ~ 5월, 학년・학급별로 실시
-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영상자료 활용
  https://www.youtube.com/watch?v=1pbYAUJpt7Y

다. 학교 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1) 교권보호 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지정

가. 교권보호 책임관 : 교감 김환웅. 업무담당자: 교무기획부장 구성훈

나. 역할

- (교권보호책임관) 침해 사안 발생 시 갈등 중재 및 신속한 초기 대응
- (업무담당자) 사안 파악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교권보호책임관】

▸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입으로 2차 피해 방지, 사실이 왜곡·와전되지 않도록 조치
▸학교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담당자 창구 단일화로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
▸응급 상황인 경우 119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2 신고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관련(침해)자와 분리, 상담 및 안전 조치(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등)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안내

【업무 담당자】

▸사안 내용, 시기, 관련자(학생인 경우) 등 조사, 관련 학생 학부모 전화 연락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발생 보고

2)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 안내

- 학교 교육과 관련한 상담 및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비치하고 이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안내・홍보
- 학부모가 자녀교육 상담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홍보

3) 학생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반영

-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교규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학교의 규율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단계적 지도 방안 마련 및 공유함.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 학부모,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분쟁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당사자 간 조정,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5)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 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권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임을 강조
- 다양한 형태의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6) 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체제 강화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엄정 대처
- 학부모의 불법 교권침해(폭언, 폭력 등)행위 발생 시 교육지원청 보고 및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고소, 고발(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 적용)등 검토
- 사제간의 도를 넘어서는 학생의 교사 폭언, 폭행 사안 발생 시 학교규칙에 의거 엄정히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
- 언론기관의 학교 내 출입·취재 시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받은 경우만 허용

라.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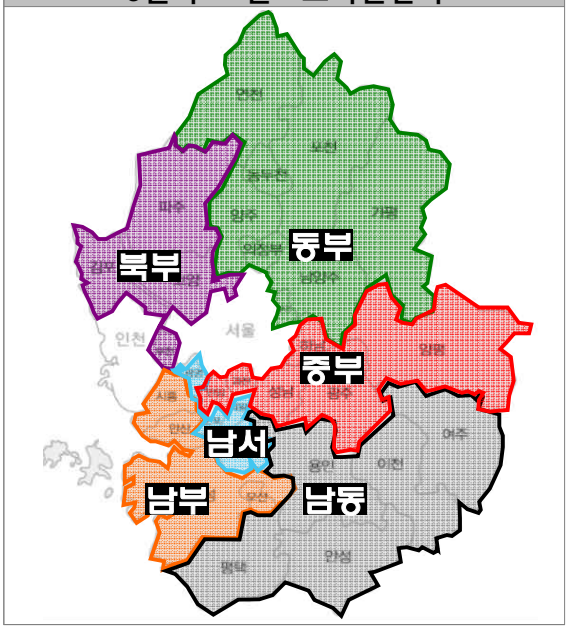
1)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가. 역할: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현장 통합 지원(행정지원,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나. 프로그램: 교원 심리·정서 상담, 마음 회복 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연수 등

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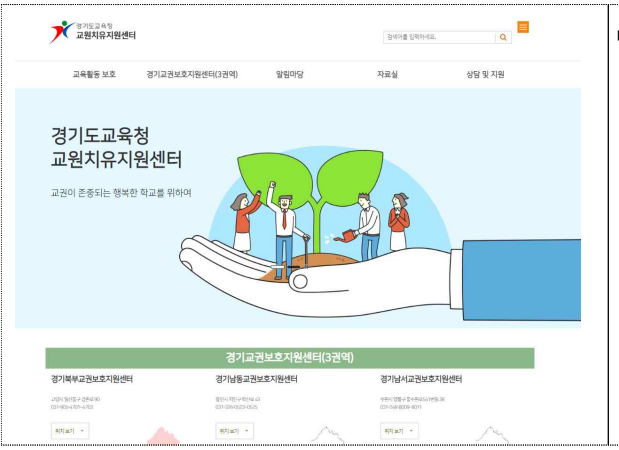
6권역 교권보호지원센터



구분	거점센터	교원수	연간 사안 발생 평균 ('18~'21)	관할 지역	비고
북부	고양	26,595	118	고양, 김포, 부천, 파주	
동부	구리남양주	18,211	98	구리남양주, 포천 의정부, 가평, 연천, 동두천양주	2023 신설
중부	성남	20,843	48	성남,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2023 신설
남서	수원	18,512	61	수원, 군포의왕, 광명	
남동	용인	21,076	75	용인, 안성, 여주, 이천, 평택	
남부	화성오산	23,260	101	화성오산, 시흥, 안산	2023 신설

구분	위치(상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	금계초등학교 별관 5층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90)	031-905-4701~3
경기동부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내	신설 예정
경기중부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내	신설 예정
경기남서교권보호지원센터	원천중학교 별관 1층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38)	031-248-8009~8011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 43 3층	031-326-0523~5
경기남부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내	신설 예정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법률 자문 가능】



▸ **이용 방법**(회원가입 필수)

-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chrome 접속)**
  https://more.goe.go.kr/eapc/index.do 또는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메인화면 주요배너-교권보호지원 '클릭'

▸ **이용 내용**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온라인 법률 자문
- 온라인 교권침해 상담 및 방문 상담 예약
-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각종 자료

Ⅴ 기대 효과

1.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기대
2.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육활동 침해 사례 관련 양식은 교육활동보호길라잡이에 의거함.

❑ 보호자 등의 학교 교육활동 침해 기준(법령)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령 안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의 제2조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